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혜경 의원)

의안 번호	20-38
----------	-------

발의년월일 : 2020. 5. .

발 의 자 : 정혜경, 김기석, 김종선
김진천, 장덕준

1. 제안이유

조례의 상위법 제명 개정과 조문상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근거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이 2016. 1. 25. 「지진·화산재해대책
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을 반영(안 제1조)

나. 2018. 11.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

3.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4.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0. 5. 13. ~ 5. 17.

6.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을 “「지진·화산재해대책
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
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6호 서식의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 -----</p>

<p>“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말한다.</p> <p>3. (생략)</p>	<p>----- ----- ----- ----- --.</p> <p>3. (현행과 같음)</p>
---	---

【관 계 법 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약칭: 지진대책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